

##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 심 사 보 고

2000. 10. 26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9월 30일

○ 회부일자 : 2000년 10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10. 2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

가. 제안이유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시설세의 부과 지역이 지난 '92.4.17(충청북도 고시 제92-62호)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소방관서의 신설, 도로개설등으로 소방수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 소방혜택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부과지역 추가지정

구 분	행정구역	현행부과 지역		금회추가 지역		변경후부과 지역		제외 지역
			%		%		%	
법정리동	1,519	515	33.9	855	56.3	1,370	90.2	149
행정통리	4,601	2,897	63.0	1,530	33.2	4,427	96.2	174
반	18,497	13,801	74.6	4,401	23.8	18,202	98.4	295

※ 시군별 부과지역, 제외지역은 붙임 “공동시설세부과지역 변경안” 참조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검토한 바

이는 '92년도 이후 도로여건 개선, 소방관서 신설과 장비의 현대화등으로 소방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이나

이번에 도 전체 18,497개반의 23.8%에 해당하는 4,401개반이 추가지정되는 것으로

- '92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와
- 추가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
- 그리고 부과지역 변경으로 인한 세수증대, 즉 도민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088	영수 조봉
-----	----------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구	구도회사무소		구도회사무소		구도회사무소		합계	비고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51	2,000	1,370	2,800	2,800	2,800	2,800	1,370	충무로
154	2,000	4,431	2,800	1,230	2,800	2,800	4,801	충무로
155	2,000	18,200	2,800	4,431	2,800	2,800	18,431	충무로

합계 : (가)충무로 (나)충무로 (다)충무로

충무로

(수정안) 제2차부록

(가)충무로 (나)충무로 (다)충무로

#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안 번호	<b>339</b>
----------	------------

제출년월일 : 2000. 10.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이 지난 '92. 4. 17.(충청북도 고시 제92-62호) 고시 되었으나 그동안 소방관서의 신설, 지역개발등으로 소방수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변경고시코자함

## 2. 주요골자

- 소방혜택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부과지역 추가지정

구 분	행정구역	현행부과지역		금회추가 지역		변경후 부과지역		제 외 지역
			%		%		%	
법정리동	1,519	515	33.9	855	56.3	1,370	90.2	149
행정통리	<b>4,601</b>	<b>2,897</b>	63.0	<b>1,530</b>	33.2	<b>4,427</b>	96.2	174
반	18,497	13,801	74.6	4,401	23.8	18,202	98.4	295

※ 부과지역 변경(안) : 따로 붙임

##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41조(부과징수)
- 충청북도세 조례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241조 【 부과징수 】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95. 12. 6 개정)

○ 충청북도세 조례 제54조 【 부과지역의 고시 】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共同施設税 賦課地域 變更(案)

시군별	행정구역			현행 부과지역			추가지정지역			변경 후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부과지역			제외지역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계	1,519	4,601	18,497	515	2,897	13,801	855	1,530	4,401	1,370	4,427	18,202	149	174	295
청주시	82	1,190	6,078	77	1,182	6,054	5	8	24	82	1,190	6,078	0	0	0
충주시	162	708	2,809	67	514	2,303	86	176	466	153	690	2,769	9	18	40
제천시	141	431	1,885	41	320	1,535	64	77	303	105	397	1,838	36	34	57
청원군	251	514	1,428	74	203	640	162	293	761	236	496	1,401	15	18	27
보은군	174	244	819	52	86	406	116	151	404	168	237	810	6	7	9
옥천군	125	215	913	37	83	465	77	120	425	114	203	890	11	12	23
영동군	131	230	847	38	82	449	88	142	390	126	224	839	5	6	8
진천군	83	263	732	25	104	404	56	156	321	81	260	725	2	3	7
괴산군	126	277	880	23	65	271	73	180	571	96	245	842	30	32	38
음성군	114	292	1,009	34	123	576	69	151	450	103	274	1,026	11	18	43
단양군	108	148	680	27	49	358	59	75	282	86	124	640	22	24	40
증 평	22	89	347	20	86	340	0	1	4	20	87	344	2	2	3

# 共同施設税 賦課除外地域 現況(案)

시군명	행정구역			부과제외지역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법정 리동		행정 통리		반	
					%		%		%
계	1,519	4,601	18,497	149	9.8	174	3.8	295	1.6
청주시	82	1,190	6,078	0	0	0	0	0	0
충주시	162	708	2,809	9	5.6	18	2.6	40	1.5
제천시	141	431	1,895	36	25.5	34	7.9	57	3.1
청원군	251	514	1,428	15	6.0	18	3.6	27	1.9
보은군	174	244	819	6	3.5	7	2.9	9	1.1
옥천군	125	215	913	11	8.0	12	5.6	23	2.5
영동군	131	230	847	5	3.8	6	2.2	8	1.0
진천군	83	263	732	2	2.4	3	1.2	7	0.9
괴산군	126	277	880	30	23.8	32	11.6	38	4.3
음성군	114	292	1,069	11	9.6	18	6.2	43	4.0
단양군	108	148	680	22	20.4	24	12.3	40	5.9
증 평	22	89	347	2	9.1	2	2.3	3	0.9

市郡別 賦課除外地域(案)

忠州市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공이 1	4	1,234	해당반 전체제외	
			공이 2	3	1,23	"	
		향산리	향산 2	1	4	"	
		재오개리	재오개	3	1,23	"	
	상모면	고운리	고운	3	1,23	"	
	동량면	서운리	서운	3	1,23	"	
			미라	2	1,2	"	
			양아	2	1,2	"	
	양성면	영죽리	금잠	1	1	"	
			상영죽	2	1,2	"	
			양촌	2	1,2	"	
			후곡	1	1	"	
	산척면	석천리	음촌	2	1,2	"	
			명암	1	1	"	
			합천	3	1,23	"	
		명서리	석문	4	1,2,3,4	"	
			정암	1	1	"	
	합계	5	9	18	40		

堤川市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구학 2	1	4	해당반 전체제외
			연박리	연박 2	1	4
		구곡리	구곡 3	1	1	"
		삼거리	삼거	1	4	"
	청풍면	황석리	황석	2	1,2	"
			후산리	후산	1	1
		사오리	부산	2	1,2	"
		부산리				
		방흥리				
		단돈리				
		오산리	장선	1	4	"
		진목리				
		장선리	장선	1	4	"
		신리	신리	1	4	"
	용곡리	용곡	2	1,2	"	
	연론리	연론	3	1,2,3	"	
도실리	도실	1	1	"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적 곡	1	1	해 당 반 전 체 제 외	
		다불리	다 불	1	1	"	
		괴곡리	괴 곡	2	3,4	"	
		전곡리	전 곡	1	1	"	
		서곡리	서 곡	2	1,2	"	
		상천리	상 천	2	1,2	"	
		하천리	하 천	1	1	"	
	덕산면	월악리	월악2(역수)	4	1,2,3,4	"	
		선고리	선고 2	1	3	"	
	한수면	덕곡리	덕 곡	5	1,2,3,4,5	"	
	백운면	운학리	운학 1	1	4	"	
		애련리	애련 2	1	3	"	
		덕동리	덕 동	2	1,2	"	
	화당리		화당 1	1	1	"	
			화당 2	2	4,5	"	
	도곡리	도곡 2	1	4	"		
	방학리		방학 1	1	6	"	
			방학 2	1	6	"	
	원월리		대 월	1	2	"	
			응 평	1	1	"	
	송학면		시곡리	시곡 3	3	1,2,3	"
			오미리	오 미	5	1,2,3,4,5	"
	계	7	36	34	57		

## 清 原 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추정 1	1	2	해 당 반 전 체 제 외
			추정 2	1	1	"
	미원면	월용리	월용 2	1	2	"
	현도면	중삼리	중삼 1	1	1	"
		하석리	하석 1	1	1	"
	부용면	시목리	시목 2	1	1	"
		노호리	노호 1	1	1	"
		외천리	외천 2	1	3	"
		문곡리	문곡 2	1	2	"
		행산리	행산 1	1	2	"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소전 1	2	1,2	해당반 전체제외
			소전 2	2	1,2	"
		후곡리	후 곡	3	1,2,3	"
		묘암리	묘 암	2	1,2	"
		마동리	마동 1	3	1,2,3	"
			마동 2	2	1,2	"
		염티리	염 티	1	1	"
문덕리	문 덕	2	1,2	"		
합 계	5	15	18	27		

報恩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보은군	내속리면	북암리	북암 1	1	3	해당반 전체제외
			북암 2	2	2,3	"
		구별리	구 병	1	2	"
	마로면	한중리	한 중	1	2	"
	회남면	은운리	은 운	1	1	"
		판장리	판장 2	1	1	"
		분저리	분 저	2	1,2	"
합 계	3	6	7	9		

沃川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오 대	1	1	해당반 전체제외	
		옥각리	옥 각	1	1	"	
	동이면	청마리	마 티	2	1,2	"	
			가 덕	2	1,2	"	
		우산리	우산 1	2	3,4	"	
			우산 2	1	3	"	
	청성면	고당리	고 당	4	1,2,3,4	"	
		합금리	합 금	4	1,2,3,4	"	
	청산면	만월리	만 월	1	1	"	
	이원면	장찬리	장 찬	1	1	"	
		포동리	포 동	1	6	"	
	군북면	막지리	막 지	3	1,2,3	"	
		용호리					
	합 계	6	11	12	23		

## 永 同 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시 금	3	1,2,3	해 당 반 전체제외
	양강면	죽촌리	죽 촌	1	1	"
		산막리	산 막	1	1	"
	용화면	조동리	평 촌	1	1	"
			상 촌	1	1	"
	여의리	여 의	1	1	"	
합 계	3	5	6	8		

## 鎭 川 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상 신	2	1,2	해 당 반 전체제외
			하 신	3	1,2,3	"
	광혜원면	구암리	무 수	2	1,2	"
합 계	2	2	3	7		

## 槐 山 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기 곡	1	3	해 당 반 전체제외
		장연면	오가리	거 문	2	1,2
	방곡리		간 곡	1	3	"
	송덕리		송 덕	2	1,3	"
			교 동	1	2	"
	조곡리		조 곡	1	3	"
	칠성면	사평리	사 곡	1	1	"
		비도리	비 도	1	2	"
		태성리	태 성	2	4,5	"
		쌍곡리	내 쌍	1	1	"
		사은리	갈 른	1	1	"
			사오랑	1	1	"
		송동리	송 동	1	4	"
	문광면	방성리	방 성	1	3	"
		양곡리	양곡 3	1	2	"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사기막	3	1,2,3	해당반 전체제외
		이평리	이 평	1	4	"
		사담리	사 담	1	2	"
		평단리	평 단	1	2	"
		무릉리	무 룡	1	3	"
		월문리	월 문	2	1,2	"
		부성리	부성 2	1	3	"
	사리면	대티리	대 티	1	1	"
		이곡리	덕 현	1	2	"
	불정면	화산리	도 촌	1	1	"
		하문리	하 문	1	3	"
		외령리	영 촌	1	1	"
		창산리	남 창	1	3	"
		탑촌리	모 촌	1	1	"
		지장리	석 정	1	1	"
	삼방리	연 지	1	1	"	
	신흥리	향 촌	1	2	"	
합 계	7	30	32	38		

## 陰城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고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사정 1	1	3	해당반 전체제외
		초천리	초천 1	3	1,2,3	"
			초천 2	3	1,2,3	"
			초천 3	3	1,2,3	"
			초천 4	2	1,2	"
		삼생리	삼생 1	4	1,2,3,4	"
			삼생 2	3	1,2,3	"
			삼생 3	3	1,2,3	"
			삼생 4	2	1,2	"
		동음리	동음 1	5	1,2,3,4,5	"
			동음 2	3	1,2,3	"
		감우리	감우 1	1	5	"
		원남면	조촌리	조촌 3	1	1
	맹동면	통동리	통 동	3	1,2,3	"
		군자리	군 자	1	1	"
	생극면	관성리	관성 4	1	1	"
		차곡리	차 곡	3	1,2,3	"
	감곡면	월정리	월 정	1	5	"
합 계	5	11	18	43		

## 丹 陽 郡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 고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도 담	2	1,2	해 당 반 전 체 제 의
		노동리	노 동	1	8	"
		수촌리	수 촌	1	1	"
		천동리	천 동	1	2	"
		장현리	장 현	2	1,2	"
	단성면	외중방리	외중방	1	2	"
		별천리	별 천	2	1,4	"
		가산리	가산 2	1	2	"
	대강면	용부원리	용부원 4	1	1	"
		성금리	성 금	1	1	"
		미노리	미 노	1	2	"
		무수천리	무수천	1	1	"
	가곡면	보발리	보발 1	3	4,5,6	"
		향산리	향 산	2	6,7	"
		가대리	가대 2	1	4	"
		여천리	여천2	1	2	"
	영춘면	하리	하 1	1	9	"
		의풍리	의풍 1	5	1,2,3,4,5	"
			의풍 2	5	1,2,3,4,5	"
		오사리	오 사	2	3,4	"
		사지원리	사지원 1	1	5	"
	사지원 2		1	4	"	
적성면	하원곡리	하원곡	1	4	"	
매포읍	상시리	상 시	2	1,4	"	
<b>합 계</b>	<b>7</b>	<b>22</b>	<b>24</b>	<b>40</b>		

## 曾 坪

시군명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통리	반수	반명	비 고
괴산군	증평읍	울 리	울 2	2	1,2	해 당 반 전 체 제 의
	도안면	연촌리	연촌 1	1	1	"
<b>합 계</b>	<b>2</b>	<b>2</b>	<b>2</b>	<b>3</b>		

## 공동시설세 개요

### 1. 과세근거(지방세법 제239조의 1)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도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

### 2. 과세대상

- 대상물건 : 건축물·선박(소방선이 있을 경우)
- 대상지역 :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 충청북도세 조례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 3. 납세의무자

- 공동시설세 부과지역내 건축물·선박 소유자

### 4.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음)
- 세율(일반세율)
  - 5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 1천만원 " : 1,000분의 0.8
  - 2천만원 " : 1,000분의 1.0
  - 3천만원 " : 1,000분의 1.2
  - 5천만원 " : 1,000분의 1.4
  - 5천만원 초과하는 가액 : 1,000분의 1.6

※ 화재위험 건물(주유소·백화점 등)은 일반세율의 2배

### 5.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 : 매년 5월 1일
- 납 기 : 매년 6월16일 ~ 6월30일(재산세 부과시 동시 부과)

### 6. 세수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도	1999년도	1998년도	1997년도
부과액(억원)	82	76	73	62
도세비중(%)	5.4%	3.6%	4.3%	2.9%